

의안번호	2205725
의 퇴 인	박해철 의원
회 답 일	2024.11.22.
추 계 번호	24B523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동수의 근로자·사용자·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변경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20만원, 2030년 72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600만원(연평균 72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4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7.2	7.2	7.2	7.2	7.2	36	7.2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5.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동수의 근로자·사용자·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함(제4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외국인 력정책위원회)	—	• 미대상 －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 ¹⁾ 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현행법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도입국가·업종 및 규모 등 정책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위 원: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³⁾

□ 개정안은 현재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동수의 근로자·사용자·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개정안에 규정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는 19명이며, 당연직 위원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나, 본 추계서는 현행법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인적 구성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19명)와 시행령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12명)의 규모를 제외하고, '동수의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라는 개정 조항을 고려하여 각 2명으로 가정
 - 당연직 위원의 인적 구성이 달라질 경우 추가재정소요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서는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 당연직 위원(12명):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차관
- 위촉직 위원(6명): 동수의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2인
-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⁴⁾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회의개최 횟수는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비용추계: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6	6	6	6	6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7.2	7.2	7.2	7.2	7.2	36.0

주: 1.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동수의 근로자·사용자·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변경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20만원, 2030년 72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600만원(연평균 72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4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7.2	7.2	7.2	7.2	7.2	36.0	7.2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p.218)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